

대전광역시 조례 제정 및 폐기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193
----------	-----

제출연월일 : 2007. 8. 24 .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및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사항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 · 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 · 폐지 등 없음

(3) 입법예고 : 해당없음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조례 제정 및 폐기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조례 제정 및 폐기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을 각각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연서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 ----- ----- -----</p>
<p>제2조(연서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시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85분의 1로 한다.</p>	<p>제2조(연서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 ----- ----- -----</p>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2007.5.11 법률 제8423호]

제15조 (조례의 제정과 폐지 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동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19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도와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연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이 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것을 청구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인명부에 적어야 하며, 청구인의 대표자는 조례의 제정안·개정안 및 폐지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 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3항에 따른 열람 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 명부를 수정하고, 이를 이의신청을 한 자와 제2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제4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5항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청구를 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를 각하하되,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청구를 각하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 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례의 제정안·개정안 또는 폐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⑨ 제1항에 따른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는 연도별로 계산하되,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인구통계에 따른다.

⑩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